## 조선전쟁시기 일본의 해상수송책동의 범죄적성격

전 경 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대와 함선들이 직접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다는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김정일전집》제3권 412폐지)

일본반동들은 조선전쟁시기 작전기지제공과 병력 및 물자수송, 침략무력파견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어느 다른 나라도 수행할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일본반동들은 조선전쟁시기 수많은 선박과 로력 등을 동원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해상수송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이 감행한 해상수송책동은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교전권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은 물론 일본의 국내법까지 유린한 범죄행위이다.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이 감행한 해상수송책동의 범죄적성격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전쟁범죄행위라는데 있다.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진행한 전쟁이였다.

일본이 조선전쟁시기에 수많은 함선과 선박, 항만시설과 로력을 동원하여 조선전선으로 련합군병력과 무장장비, 군수물자를 수송해준것은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침해한 엄중한 침해행위로 된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전쟁을 패망후 저들이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던 재생재무장과 조선침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조선전쟁참전을 국가정책으로 결정하고 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길에 들어섰다.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은 우선 저들의 각종 선박들을 동원하여 수많은 병력과 군 사장비들을 조선전선으로 수송하는 군사작전을 벌리였다.

조선전쟁초기부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조선전선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병력은 일본선 박들을 통하여 해상으로 수송되였다.

조선전선으로 진입하는 병력을 싣고 조선전선에 제일먼저 들어온 일본선박들은 땅크와 차량을 실은 땅크상륙함 《Q058》호와 2 500명의 병력을 실은 《다까사고마루》, 3 500t의 보급품을 실은 화물선 《펨비너》호였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전선에 더 많은 병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선박들을 증가하였는데 1950년 7월 10일현재 동원된 일본선박수는 29척, 배수량은 7만 4 000t이였으며 7월 15일에는 40척으로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조선전쟁초기부터 일본반동들은 선박들을 동원하여 방대한 병력과 장비를 조 선전선의 작전지역으로 수송하였다. 일본반동들은 1950년 9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인천상륙에도 선박들을 동원하여 병력과 군사장비들을 수송하였다.

여기에는 상선관리위원회소속 땅크상륙함 30척을 포함하여 66척의 일본선박들이 참가하였는데 대표적인 선박들은 《후꾸쥬마루》、《소난마루》、《가이꼬마루》 등이였다.

련합군사령부의 어느 한 관계자는 인천상륙에서 수송을 맡은 일본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선박의 대부분이 조선에서의 병력, 물자수송에 사용되였다. 제10군단을 인천상륙지점으로 수송하는데 사용된 120여척의 선박가운데서 그 3분의 1은 일본인선원들이 타고있었다.》고 고백하였다.

일본반동들은 1950년 10월에 진행된 원산상륙작전에도 상선관리위원회소속 땅크상륙함 23척을 동원하여 병력과 군수물자수송을 전적으로 맡아하였으며 1950년말 흥남으로부터 퇴각하는 제국주의련합군무력의 수송작전에도 저들의 각종 선박들을 동원하였다.

1950년 12월에 진행된 이 작전에는 미군의 상륙함이나 수송선들과 함께 일본의 상 선관리위원회소속 땅크상륙함 27척과 상선 7척이 참가하였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일본선 박들은 《펜트리스》호, 《센잔마루》, 《시나노마루》, 《도바다마루》, 《요네야마마루》 등이였다.

일본은 이 작전에서 10만 5 000명의 병력과 1만 750대의 차량, 35만t의 군수물자를 수송하였으며 여기에 동원된 일본인선원은 1만명정도였다고 한다.

조선전쟁시기 해상수송작전에 참가한 일본선박선원들의 대부분은 과거 일제의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던 해군군인출신들이였다. 그에 대하여서는 구해군출신인 기무라가 1개 월간 수송선선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사세보, 요꼬하마 등지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부산, 군산, 인천, 거제도 등지에 《무기, 탄약, 땅크, 군량 등 모든 군수물자와 군대까지 태워 그 쪽(조선)으로 날랐는데 인천에서는 함포사격의 비속을 뚫고 상륙시키였다.》고 한 사실과 수송선선장으로 조선전쟁에 참가한 일본의 구해군출신인 하마자끼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본에서 조선의 동, 서해항구들을 왕복하였는데 그 임무는 군수물자(식량, 탄약)의 수송과 병력수송이였다.》고 고백한 내용 등을 통하여 알수 있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저들의 항만로동자들까지 동원하여 조선전선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수송하여주었다.

조선전쟁시기 군사작전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였다. 그런데 전쟁초기 공화국남반부지역의 주요항구들에는 짐을 부리울수 있는 항만로동자들이 대단히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조선전선으로 수송되는 군수물자들을 부리우는데 일본인항만로동자들을 동원시켰다.

일본은 전쟁초기부터 전국적규모에서 항만로동자들을 모집하여 조선전선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주요선박들에 배치하였다. 그가운데는 1950년 7월 15일 미극동해군사령관이 어느 한 군사령관에게 조선전선으로 파견되는 일본선박들인 《다쯔야스마루》에 10명, 《신세이마루》에 20명, 《고나쯔마루》에 44명, 《소난마루》에 44명, 《데이비드 쇄크스》호에 42명, 《프레드 에인즈워스》호에 42명, 《에드윈 패트리크》호에 42명의 일본인항만로동자(권양기운전공, 소형선박승무원 등)들을 배치할것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

인천상륙이나 원산상륙에서도 수송선에 실은 군수물자를 부리우기 위하여 일본인항 만로동자들을 동원시켰는데 1950년 10월 중순 인천에 입항한 미해군수송함 《머린 포닉 스》호에는 일본인항만로동자 913명이나 타고있었다.

일본인항만로동자들을 전투지역, 작전지역인 조선의 주요항구들에까지 파견한것은 일 본의 해상수송이 단순한 병참지원활동이 아니라 군사작전행위, 전쟁참전행위라는것을 다 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선박과 항만로동자들을 동원하여 병력과 장비, 물자들을 조선전선으로 수송하여줌으로써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려는 제 국주의련합세력의 군사작전에 적극 참가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이 감행한 해상수송책동의 범죄적성격은 다음으로 그것이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규는 물론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헌 법까지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군국주의세력을 재생재무장시킨 로골적인 범죄행위라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을 군국화하지 말데 대한 국제법규의 요구를 무 시하고 군국주의세력, 전쟁세력을 보존확대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전패국이다. 일제의 패망이 확실해지고있던 제2차 세계대전말기와 전후에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의 장래문제를 규제한 일련의 국제법적문건 들이 채택되였다.

1945년 7월에 채택된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군대가 완전히 무장해제된 다음 군인들이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평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일본정부가 전체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선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노력할데 대한 문제 등을 규제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포츠담선언》의 기본내용은 과거 수십년동안 침략전쟁을 통하여 조 선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준 일본의 전쟁세력, 군국주의세력에 게 징벌을 가하고 완전히 제거하는것이였다.

일본도 《포츠담선언》을 수락하였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련합국에 보낸 《포츠담선언수락통고》에는 일본《천황》이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수락하며 《포츠담선언》의 규정들을 리행하기 위해 모든 일본군대가 전투행위를 끝내고 련합군측에 무기를 넘겨준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여있으며 1945년 9월 2일 일본이 서명한 《일본항복문서》에서도 일본군대가 무조건항복을 선포한다는것,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는것, 일본《천황》과 일본정부가 련합국이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집행한다는것 등을 명백히 밝히였다.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공식수락한것은 결국 일본이 앞으로 군국주의를 되살리는 길이 아니라 평화국가로 영원히 남아있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식표명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포츠담선언》은 《포츠담선언수락통고》,《일본항복문서》등 여러차례에 걸치는 일본정부의 공식수락과정을 통하여 련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전승국과 전쾌국의 합의문건으로, 패망한 일본의 법적지위를 한정시키는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법적문건으로 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에서는 수십년동안 조선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준 전쟁세력이 그대로 보존되였다.

최대의 전범자인 《천황》이 전범자명단에서 제외되였으며 1946년에는 헌법을 통하여

《천황》제도를 보존하였다. 수많은 전범자들과 파쑈관리들에 대한 형집행과 공직추방이 취소되여 전쟁세력이 그대로 살아났다. 과거 침략전쟁을 물질적으로 적극 뒤받침해온 독점 재벌들은 해체된것이 아니라 교활한 방법으로 분산은폐되였다.

일본반동들은 자기 나라의 지리적위치와 력사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국주의련합 세력과 손잡고 지난 시기 침략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 해상수송기구와 수단들을 되살 리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련합군사령부는 항복조인식이 있은 다음날인 1945년 9월 3일 일본의 모든 선박(100t이상)들이 미래평양함대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본선박들에 대한 관리는 초기에 련합군사령부 함대련락부가 담당하였다. 1945년 10월 10일에는 련합군사령부에 일본상선관리국이라는 해상수송기구를 새로 만들고 일본에서 선박의 운항, 건조, 수리, 처분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11월 9일에는 일본의 선주, 항만업자들로 구성된 민간상선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해상수송수단을 보존확대하기 위한 련합군측의 행동에 합세하여 일본반동정부는 태평양전쟁시기 해상수송을 주도한 선박운영회를 그대로 존속시켜 자기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게 할것을 제안하였으며 련합군사령부도 그것을 승인하였다.

일본반동들은 해상수송기구들을 보존하는것과 함께 조선과 아시아침략에 리용하려는 목적밑에 해상수송수단을 계속 확장시켰다.

일본은 1946년 1월 수송선 100척, 땅크상륙함 100척, 병원선 6척, 소형보조함선 9척합계 215척의 선박을 미국으로부터 대여받았다.

이 대여선박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하겠는가에 대해서는 1946년 1월 18일에 진행된 일본정부차관회의에서 채택된 《미국선박정비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에서 규정되였다. 그에 의하면 대여선박들의 운영은 선박운영회가 맡으며 운영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 성이 협력하게 하였다.

조선전쟁발발전야인 1950년 4월 1일 일본선박들은 민간회사들에 넘어갔으며 이것을 계기로 선박운영회의 명칭을 상선관리위원회로 변경시켰다. 이때 미국이 제공한 대여선박 만은 상선관리위원회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조선전쟁발발시 일본상선관리위원회에 남아있는 미국대여선박수는 《조선전쟁-미태평양함대작전-미국태평양함대사령관 중간평가보고》에 의하면 땅크상륙함 39척, 수송선 1척, 보조함선 5척 합계 45척이였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세력을 제거할데 대한 국제법규의 요 구가 무시되고 전쟁세력, 해상수송수단이 보존확장되였다.

조선전쟁시기 일본의 해상수송책동은 특히 다른 나라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헌법의 요구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1946년 11월 3일 《일본국민은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며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륙해공군과 기타의 전쟁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제한 제9조 등 중요조항들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의 해상수송책동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발동된 다른 나라에

대한 교전권행사로서 일본의 교전권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을 위반한 로골적인 전쟁참 전행위이다.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의 해상수송책동은 명백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발동된 교전 권행사이다.

조선전쟁시기 일본의 해상수송은 《개별적인 회사와 련합군사령부와의 계약에 기초한 행위이며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것이 당시 일본당국의 립장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전쟁참전죄행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의 체질적인 교활 성의 표현일뿐이다.

일본수상 요시다는 이미 조선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50년 5월 3일 일본자유당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만일 조선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전쟁에 참가할것이다.》고 하였 는가 하면 전쟁개시후인 7월 14일에는 일본국회에서 《조선사건은 공산세력의 위협이 이 미 우리 나라 주변에 얼마나 다가왔는가를 실증하여주며 우리 나라로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할것이다.》고 하면서 조선전쟁참전을 일본반동정부의 국가정책으로 내세웠다.

일본외무성은 1950년 8월 19일에 발표한 《조선전쟁과 일본의 립장》이라는 문건에서 일본이 《유엔군》에 협력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본의 안전을 지킬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조선전쟁에 가담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전쟁시기 일본의 해상수송이 결코 개별적인 회사들의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이 벌린 해상수송책동은 단순한 병참지원이 아니라 조선인 민을 반대하는 군사작전행위, 전쟁참전행위이다.

모든 사실과 자료들은 일본이야말로 조선전쟁의 특등참전국이며 특대형전범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과거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죄악과 함께 지난 조선전쟁시기 저지른 해상수송책동을 비롯한 모든 범죄적사실에 대하여 전면공개하고 국 가적인 사죄와 배상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무분별한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력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워온 그 대가로 종국적멸망의 시각을 더욱더 앞당기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실마리어 조선전쟁, 해상수송